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 ‘프리랜서 분야’ 참가자 모집 공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지닌 유망 프리랜서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는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대회 개요

- ☐ (대 회 명)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
- ☐ (참가대상) 모집 공고일('23.9.1.) 기준으로 사업자를 낸 이력이 없는
프리랜서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 (지원혜택) 상장, 상금 및 후속 연계지원
- ☐ (운영절차) ①지역 예선(서류,발표) → ②사전 교육 → ③본선 대회
- ☐ (시상규모) 총 상금 2,020만원, 상장 8점(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점, 창업진흥원장상 6점)

<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 프리랜서 분야 시상규모 >

구 분	수상자 수(명)			상금 (만원)	합계 (만원)	상장
	제조	플랫폼 (지식서비스)	계			
대 상	1	1	2	200	40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최우수상	3	3	6	100	600	창업진흥원장상
우 수 상	3	3	6	70	420	-
창의혁신상	5	5	10	60	600	-
합 계	12	12	24	-	2,020	-

- ☐ (세부 추진일정) 전국 예비 1인 창조기업 프리랜서의 지역별 예선* 후
본선 진출자 24인 결정, 사전 교육 → 본선 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발

< 경진대회 주요 추진 일정 >

모집공고·접수	지역 예선*	사전 교육	본선 및 시상
K-Startup 홈페이지 '23.9.1. ~ 9.25.	서면→대면평가 '23.10월	IR피칭 교육 1:1멘토링 등 '23.11월	발표평가 및 부대행사 12월 1주(예정)

* 참가 신청 시, 예선평가를 진행할 1인 창조기업 거점센터 (총 6개) 중 1개 필수 선택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 자격 및 제외대상

☐ 참가 자격

- 모집 공고일('23.9.1.) 기준, 아이디어를 가졌으나 사업자를 낸 이력이 없는 프리랜서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 신청 아이템의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업종에 부합하여야 함

* 1인 창조기업(「1인창조기업법」 제2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광업 등 32개 업종 제외)

※ [별첨]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 참고

☞ (참고) 1인 창조기업 여부 사전 확인 방법

- ① K-Startup(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소개 → ③ 시설·공간·보육 → ④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클릭 → ⑤ 본문 내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클릭
후 제외업종 여부 확인

☐ 참가 제외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인 창조
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창업 아이템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향후 참가 자격 부적격 확인 시 자격 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 9. 1. (금) ~ 9. 25. (월), 16:00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 접속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K-스타트업 회원가입 후 신청(마감 2~3일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마감일시('23.9.25.(월), 16:00)전까지 '제출완료'(버튼 클릭) 하여야 정상 접수완료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신청서 제출 완료 이후에도 접수 마감 이전('23.9.25.(월), 16:00)까지 수정 가능

□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접속하여 '2023년 1인 창조기업 창업경진대회' 공고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 신청자는 예선평가를 진행할 주관기관(전국에 위치한 1인 창조기업 거점센터 총 6개) 중 1개를 필수 선택하여야 함

구분	지역	1인 창조기업 거점센터명(주관기관(협력기관)명)	연락처
1	서울	오피스이앤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오피스이앤씨)	02-2055-2023
2	경기·인천	미래서비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주)미래서비스(인천창업통합지원센터))	032-216-0091
3	충청·강원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전광역시((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864-5111
4	광주·전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1-280-7499
5	대구·경북	대구 동성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	053-428-9904
6	부산·울산·경남	경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스타트업파트너스(주))	055-267-2311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 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 서면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사업자 이력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신청자)

- ◇ 자격검토를 위한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23.9.1.)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 참가자격 및 신청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인원에 한하여 별도 접수 (개별 안내 예정)
-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접속 → ② 사업공고 → ③ 공고 클릭 → ④ 공고문 내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⑤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⑥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록(업로드) → ⑦ 제출

□ (평가절차) 요건검토(참가자격) 후 지역예선(서면·대면평가)을 통해 본선평가 진출 24명(제조분야 12명, 플랫폼 분야 12명) 선발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참가동기 및 역량, 사업 경쟁력, 성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선(대면평가), 본선평가는 발표평가 방식(발표·질의응답 총 10분 이내)으로 진행하며 평가 시 별도의 발표자료(PPT 등) 준비 필요

* 발표평가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발표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내용	예선평가 (점)	본선평가 (점)
참가동기 및 역량	경진대회 참가 동기, 프리랜서 활동 경험, 전문분야 보유 역량 등	30	20
사업 경쟁력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차별성 확보방안, 기술 및 사업성	30	30
성장 가능성	전문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30	40
실현 가능성	창업 아이템 제작 및 생산 역량	10	10
합계		100	100

- **(선정규모)** 지역예선 신청 경쟁률에 따른 거점센터별 선정 T/O부여, 제조 분야 12명, 플랫폼 분야 12명 총 24명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
- * (참고) '22년 16개사 선정 기준 평균 경쟁률 13.6:1이며, 예선평가를 진행할 거점센터 선택은 거주지 관계없이 선택 가능

5 사전교육

- **(지원대상)** 본선 진출자 총 24인(제조 12인, 서비스·플랫폼 12인)
- **(지원내용)** 참가자 네트워킹, 사업계획 고도화·구체화, IR 피칭스킬 등 본선평가 대비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지원시기)** 11월 중 (예정)
 -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등은 본선 진출자 대상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사전교육 주요 프로그램(안) >

구 분	세부 내용
① 네트워킹	· 센터 - 참가자 간 아이스 브레이킹 및 네트워킹
② 기본교육	·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IR 피칭 방법 등 기본 교육 등
③ 발표준비	· 발표자료 (PPT) 개선 및 본선 당일 피칭을 위한 연습 등

* 상기 프로그램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방식 병행 가능

6 유의사항

- 모집공고문 미 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타 창업경진대회**와 중복 수상 불가
 - * 「프리랜서 경진대회」와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을 동시에 했을 경우 두 대회 중 1개 택일

- **1인당 1개의 아이템**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를 대필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주최·주관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상기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상 이후에도 수상 취소 및 상금환수 등 조치 가능
- 타인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주관기관은 책임지지 않음
- **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거나, **지식재산권이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 작품**이거나, **이미 출시·개발이 완료된 작품**을 출품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4.4%)은 수상자가 부담함
- 동 경진대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7 문의처

- **(신청관련 시스템 문의)** 국번 없이 1357
- **(대회 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1925)

참고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서비스가 성공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공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09년~계속)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 **(지원대상)** (예비)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업 등 포함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며, 전자상거래업 포함 45개 업종 지원

- ☐ **(지원내용)** (예비)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법률·회계 등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투자유치 등 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내용 >

구 분	주요내용
사무공간	• 개인데스크, 편의시설 (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사무용 집기 등)
경영지원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교육·멘토링	•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네트워킹	• 지역별·업종별, 입주·졸업 기업간, 1인 창조기업·우수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별첨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32개 업종을 말한다.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